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49
----------	-------

발의연월일 : 2026. 4. 2.

발 의 자 : 박홍배 · 김 윤 · 한준호  
윤준병 · 윤건영 · 박 정  
박희승 · 송재봉 · 이정현  
김한규 · 김태년 · 진성준  
민병덕 · 이정문 · 김남희  
박지원 · 오기형 · 이훈기  
김남근 · 이주희 · 김현정  
김우영 · 박정현 · 안도걸  
정진욱 · 서미화 · 한정애  
정준호 · 김태선 · 최혁진  
의원(30인)

제안이유

금융회사는 자본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공공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일반 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강화된 기업지배구조 개선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와 이사회 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한편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집중투표 배제를 금지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으나,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율에는 이러한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

또한 금융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약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주제안 독립이사 후보에 대한 보호 장치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율에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감사위원 선임 방식을 강화하는 한편,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집중투표 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대형금융회사(대형금융회사는 법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름. 이하 같음)의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주주총회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아울러 대형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로 구성되는 주주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과정에 주주 참여를 보장하고 금융회사 이사회와 주주 간의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함(안 제2조제4호 등).

- 나. 대형금융회사 대표이사의 최초 선임은 주주총회 결의로 하고 대표이사의 연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 다. 대형금융회사는 주주위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함(안 제17조제2항).
- 라. 주주제안 독립이사후보를 별도 의제나 안건으로 분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7조제7항 신설).
- 마. 주주제안 독립이사후보에 대한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허위 공시 및 차별적 정보제공 행위를 금지함(안 제17조제8항 신설).
- 바.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에 대해서는 모두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함(안 제19조제5항).
- 사.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 청구 요건을 완화함(안 제33조제7항 신설).
- 아. 대형금융회사는 의결권 있는 주식 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는 주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대표이사(「상법」에 따른 집행 임원을 둔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같은 법 제389조제1항 및 제408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8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하되, 대표이사의 연임은 같은 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선임사외이사”를 “선임독립이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임사외이사”를 “선임독립이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사외이사회의”를 “독립이사회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선임사외이사”를 “선임독립이사”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제33조의2에 따른 주주위원회가 추천한 위원을 3명 이내로 포함하여야 한다.

⑦ 금융회사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으로 추천된 독립이사후보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다른 독립이사후보와 분리하여 별도의 의제나 안건으로 주주총회에 상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으로 추천된 독립이사후보에 대하여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적으

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 제목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외이사 1명 이상”을 “독립이사”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본문 및 단서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한다.

제20조제4항 후단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한다.

제33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⑦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2조의2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6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주주위원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주주

위원회를 둔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가 추천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주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우리사주조합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조합의 계정과 조합원의 계정을 합하여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주주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선임사외이사”를 각각 “선임독립이사”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제11호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의4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외이사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되어 재직 중인 사외이사 및 선임사외이사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독립이사 및 선임독립이사로 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이사”란 사내이사, <u>사외이사</u>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p> <p>4. “<u>사외이사</u>”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로서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사람을 말한다.</p> <p>5. ~ 7. (생략)</p> <p>제6조(<u>사외이사</u>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u>사외이사</u>가 될 수 없다. 다만, <u>사외이사</u>가 됨으로써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u>사외이사</u>가 될 수 있다.</p> <p>1. ~ 6. (생략)</p> <p>7.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p>	<p>제2조(정의)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독립이사</u>----- <u>사</u>----- ----- -----.</p> <p>4. -<u>독립이사</u>----- ----- ----- -----.</p> <p>5. ~ 7. (현행과 같음)</p> <p>제6조(<u>독립이사</u>의 자격요건) ① ----- -----<u>독립이사</u>----- <u>독립이사</u>----- <u>독립이사</u>----- ----- -----<u>독립이사</u>----- <u>사</u>-----.</p> <p>1. ~ 6. (현행과 같음)</p> <p>7. -----</p>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

8. 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③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2조(이사회 구성) ① 금융회사는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

독립이사-----

-----독립이사-----

8. -----독립이사-----

② -----독립이사-----

③ -----독립이사-----

제12조(이사회 구성) ① -----

-----독립이사-----

② 독립이사-----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 사원총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 설>

-----  
-----  
-----독립이사-----  
-----.

③ -----독립이사-----  
-----독립이사-----  
-----  
-----  
-----  
-----  
-----  
-----  
-----  
-----  
-----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대표이사(「상법」에 따른 집행임을 둔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을 말한다)는 같은 법 제389조제1항 및 제408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8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하되, 대표이사의 연임은 같은 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

제13조(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①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 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 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④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은 선임사외이사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략)

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① -----독립이사-----  
-----.

② -----  
---독립이사-----  
-----

-----독립이사-----

-----선임독립이사-----  
-----.

③ 선임독립이사-----  
-----.

1. 독립이사-----

독립이사회의-----

2. 독립이사-----  
-----

3. 독립이사-----  
-----

④ -----  
선임독립이사-----  
-----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

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후보를 추천한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후단 신설>

③ (생략)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⑤·⑥ (생략)

<신설>

④ -----독립이사-----.

⑤ -----독립이사-----.

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독립이사-----  
-----  
-----  
-----.

② -----  
-----.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제33조의2에 따른 주주위원회가 추천한 위원을 3명 이내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독립이사-----  
-----  
-----  
-----독립이사-----.

⑤·⑥ (현행과 같음)

⑦ 금융회사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으로 추천된 독

<신 설>

제18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① 금융회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는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

립이사후보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다른 독립이사 후보와 분리하여 별도의 의제나 안건으로 주주총회에 상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으로 추천된 독립이사 후보에 대하여 주주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독립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① -----독립이사-----  
-----  
-----  
-----  
-----.

② 독립이사-----  
-----  
-----  
-----.  
-----.

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

사위원의 선임 등) ① (생략)

②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③·④ (생략)

⑤ 금융회사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⑥ ~ ⑨ (생략)

⑩ 상근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의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재임(在任)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람은 제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이 될 수 있다.

제20조(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① ~ ③ (생략)

④ 감사위원(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

사위원의 선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독립이사-----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독립이사-----  
-----.

⑥ ~ ⑨ (현행과 같음)

⑩ -----독립이사-----  
-----  
-----  
-----.

-----독립이사-----  
-----  
-----  
-----.

-----독립이사-----  
-----.

제20조(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있던 사람은 제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상근감사가 될 수 있다.

제33조(소수주주권) ① ~ ⑥ (생략)

<신 설>

⑦ (생략)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그 각 항에서 규정하는 「상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 설>

-----  
-----  
-----.

제33조(소수주주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2조의2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⑨ -----제7항-----  
-----  
-----  
-----  
-----.

제33조의2(주주위원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주주위원회를 둔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회사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가  
추천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주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우리사주조합이 6개월 전부  
터 계속하여 조합의 계정과 조  
합원의 계정을 합하여 금융회  
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  
는 주식을 보유한 때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주주위원회를 구  
성할 때 우리사주조합이 추천  
하는 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1. (생략)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  
반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사

제43조(과태료)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  
-----독립

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생략)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  
임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아니  
한 자

5.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  
임사외이사의 업무를 방해하  
거나 협조를 거부한 자

6. (생략)

7.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  
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  
사로 두지 아니한 자

8. ~ 10. (생략)

1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  
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자

12. ~ 26.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의3. (생략)

2의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면서 그 사유

이사-----  
-----

3. (현행과 같음)

4. -----선  
임독립이사-----  
-----

5. -----선  
임독립이사-----  
-----

6. (현행과 같음)

7. -----  
-----독립이  
사-----

8. ~ 10. (현행과 같음)

11. -----  
-----  
-----  
독립이사-----  
-----

12. ~ 26. (현행과 같음)

② -----  
-----  
-----.

1. ~ 2의3. (현행과 같음)

2의4. -----  
독립이사-----  
-----

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공시한 자 2의5. ~ 10. (생 략) ③·④ (생 략)	----- ----- 2의5. ~ 10.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	---